

투자위험등급 :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피델리티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델리티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피델리티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69712)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02-3783-0901)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 업무 위탁운용사: FIL Investment Management (Singapore) Limited))
4.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fidelity.co.kr) 및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5. 작성기준일 : 2015년 12월 08일
주) 본 간이투자설명서는 2009년 04월 30일자로 최초 제출된 이후 정정신고된 내용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간이투자설명서의 다른 부분들은 원래 내용을 유지하였으며 본문 전체를 상기 작성기준일자로 갱신한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5년 12월 11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총액: 60,000,000,000,000 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속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피델리티자산운용 주식회사 (전화: 02-3783-0901 (www.fidelity.co.kr))
금융투자협회(전화: 02-2003-9000 (www.kofia.or.kr))
각 판매회사
11.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이 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1)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인도에 상장된 인도 기업 주식 및 인도로부터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해외 기업들의 주식 (이하 “인도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되며,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투자자산의 가치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2)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피델리티 인디아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모투자신탁은 인도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을 인도 관련 주식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은 인도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외화자산의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참조지수: MSCI India Index with an 8% cap

* MSCI India Index: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발표한 인도 지수

* MSCI India Index with an 8% cap: MSCI India Index 내 개별 종목에 대하여 8% 상한선을 적용한 지수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을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2)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은 인도에 상장된 인도 기업 주식 및 인도로부터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해외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추구하는 투자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시가총액 전역에 걸친 종목선택에 있어 피델리티의 상향식(bottom-up)방식을 활용하며 이는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본 과정이 됩니다.

모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상향식 투자접근법을 구사하며 개별종목 선정은 통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고 동종 업계평균 또는 시장평균 보다 더 높은 수익성장률을 보이는 기업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 탐방도 투자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경영진의 과거 실적도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됩니다. 경영진의 신뢰도, 특히 주주에게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장기적인 산업구조의 변화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산업 내 대표기업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기업만을 따로 떼어 이해하려는 것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 및 시장의 장기 트렌드를 고려하며, 이를 통해 실제적인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벤치마크지수를 의식하고는 있지만 지수에서 벗어날 용의가 있으며 그 편차는 확신수준과 밸류에이션에 의해 결정됩니다.

(3) 위험관리

모투자신탁은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헤지하지 아니하며,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환율변동위험). 그러나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주요 투자위험

구분	주된 투자위험
투자원금손실위험	투자신탁의 투자 원금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보장되거나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투자 원본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투자자들을 제외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위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그러한 기초투자자산의 가치는 금리와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채권 등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는 금리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변합니다. 몇몇 투자신탁은 가격하락 및 자본손실의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고수익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 등급 유가증권, 등급이 낮은 유가증권 및 이에 상당하는 등급이 없는 유가증권은 등급이 높은 유가증권 보다 수익 및 가격의 변동 폭이 더 넓을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율위험을 헤지하지 않는 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위험	투자신탁은 전부 혹은 일부를 신흥시장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증권이 선진국 시장의 증권 보다 변동이 더 심하고, 따라서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일정한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또는 등록신청서) “제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지위험	투자신탁이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타	이외에도 집합투자기구는 분산투자관련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유동성위험, 환매위험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이 투자신탁은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높은 시장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이러한 투자신탁은 투자자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 중 적은 부분만을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피델리티자산운용의 내부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 운용전문인력

(2015년 11월말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김미영	1975	포트폴리오 매니저	23개	14,993 억원	[주요 경력] 2013-현재 피델리티자산운용 포트폴리오매니저 2004-2013 피델리티자산운용 투자애널리스트 1999-2004 굿모닝신한증권 주식애널리스트 [학력 및 기타 이력] 국제재무분석사(CFA)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

※ 상기 운용현황은 모두자산탁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하였으며 실제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의 운용전문인력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습니다.

※ 운용전문인력이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운용전문인력

(2015년 9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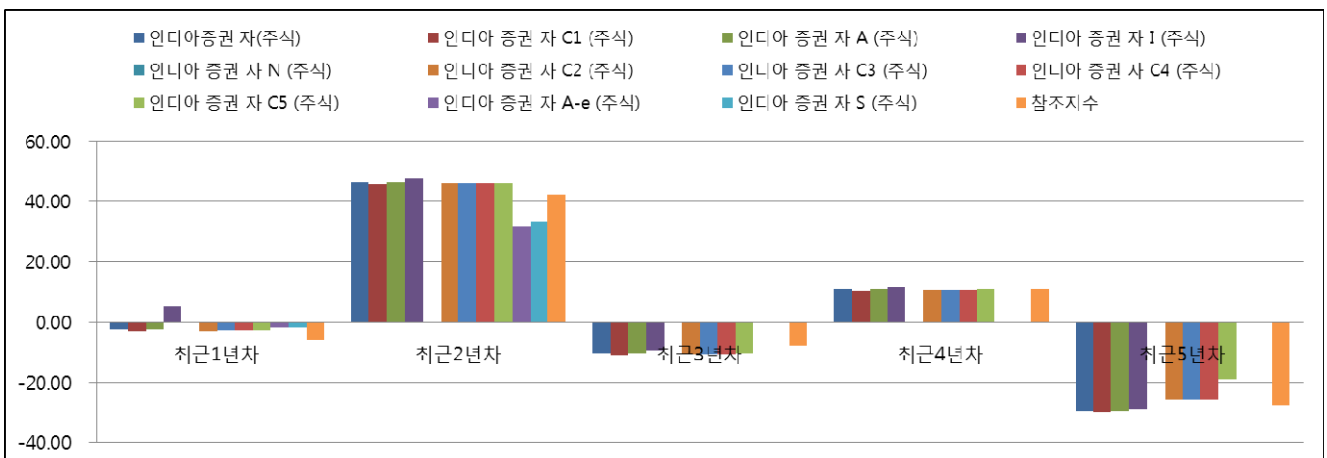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USD 백만)	
팀 오차드 (Tim Orchard)	1969	포트폴리오 매니저/ Head of Equities – Asia ex Japan	3	1,717.08	경력: 2014- Head of Equities, Asia ex-Japan FIL Limited, 싱가포르 2010 – 2013 Head of Equities, Asia ex-Japan FIL Limited, 홍콩 2008 – 2010 Head of Equities – Tokyo,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USD 백만)	
					FIL Limited, 일본 파트너/ 펀드매니저, FreeSpirit Advisors, 시드니 2001 - 2002 이사/ 포트폴리오 매니저, 메릴린치, 싱가포르 1995 - 2000 이사/주식부문 공동대표, 머큐리/ 메릴린치, 동경 1995 - 2000 포트폴리오 매니저, 머큐리/메릴린치, 동경 1992 - 1994 부펀드매니저, 머큐리자산운용, 런던 학력 및 자격: 경제학 석사, University of Cambridge 공인재무분석사(CFA) 자격증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단위: %)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14.12.01 ~ 2015.11.30	2013.12.01 ~ 2014.11.30	2012.12.01 ~ 2013.11.30	2011.12.01 ~ 2012.11.30	2010.12.01 ~ 2011.11.30
인디아증권 자(주식)	-2.40	46.46	-10.44	10.89	-29.60
인디아 증권 자 C1 (주식)	-2.85	45.75	-10.85	10.38	-29.94
인디아 증권 자 A (주식)	-2.37	46.49	-10.41	10.93	-29.56
인디아 증권 자 I (주식)	5.13	47.76	-9.57	11.93	-28.88
인디아 증권 자 N (주식)	0.00	0.00	0.00	0.00	0.00
인디아 증권 자 C2 (주식)	-2.76	45.93	-10.77	10.50	-25.66
인디아 증권 자 C3 (주식)	-2.66	46.08	-10.68	10.61	-25.65
인디아 증권 자 C4 (주식)	-2.56	46.22	-10.59	10.72	-25.58
인디아 증권 자 C5 (주식)	-2.47	46.36	-10.50	10.82	-18.99
인디아 증권 자 A-e (주식)	-1.74	31.82	-	-	-
인디아 증권 자 S (주식)	-1.72	33.51	-	-	-
참조지수	-5.94	42.33	-7.77	10.91	-27.81



- 1) 참조지수= MSCI India Index with an 8% cap
- 2) 참조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음
- 3)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의 기간수익률을 기재함. 다만 각 투자신탁 및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상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 상기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2015년 11월말 기준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조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 대상 기간에 대하여는 과거(변경전) 참조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 수수료 ¹⁾	후취 판매 수수료 ^{2) 3) 4)}	환매 수수료 ^{5) 6) 7)}	
				2015년 12월 11일 까지 환매청구시	2015년 12 월 14일부터 환매청구시
종류 A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1.2% 이하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
종류 A-e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0.5% 이하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
종류 C1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2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 된 수익자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3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 된 수익자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4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 된 수익자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5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 이상 된 수익자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e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 전용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한 적립금으로 투자하는 경우	-	-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
종류 PRS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	-	해당 없음	-
종류 PRS-e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로서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	-	해당 없음	-
종류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	3년미만: 환매금액의 0.15% 이하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
종류 PRS-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	-	해당 없음	-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	후취 판매	환매 수수료 ^{5) 6) 7)}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S-I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최초 납입금액이 30 억원 이상인 경우	-	-	해당 없음
종류 I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100 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500 억원 이상 투자하는 법인, 100 억원 이상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N	모투자신탁의 초기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자산운용회사의 해외계열회사가 투자하는 경우	-	-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부과기준	수익증권 매입시	-	환매대금 지급시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를 펀드에 반환함)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의 상기 명시한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음. 차등 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주2) 후취판매수수료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부과됨. 다만,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

주3)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상기 명시한 범위 내에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함)별로 해당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명시한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음.

주4)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음**

주5)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함)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함)별로 상기의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함.

주6)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전환절차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주7)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 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정한 최소 보유기간보다 짧은 경우 환매수수료가 부과됨.

* 이 투자신탁은 1940년 미투자자문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상 미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수익증권은 1933년 미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상 미국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니다. 수익증권은 미국법, 적용법률, 규칙 또는 해석상 등록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 이상 미합중국 또는 그의 영토, 속령 혹은 관할지에서 또는 이러한

지역들의 국민이나 거주자들의 이익을 위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매도되지 않습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들은 자신이 미국인이 아님을 증명하도록 요구될 것입니다.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피델리티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2015년 10월 기준)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비용 비율	합성총보수 비율	증권거래 비용
종류 A	0.8000	1.0000	0.0400	0.0280	0.0000	1.8680	2.1180	0.1132
종류 A-e	0.8000	0.3700	0.0400	0.0280	0.0000	1.2380	1.4777	0.1048
종류 C1	0.8000	1.5000	0.0400	0.0280	0.0000	2.3680	2.6011	0.1032
종류 C2	0.8000	1.4000	0.0400	0.0280	0.0000	2.2680	2.4909	0.0892
종류 C3	0.8000	1.3000	0.0400	0.0280	0.0000	2.1680	2.4032	0.1037
종류 C4	0.8000	1.2000	0.0400	0.0280	0.0000	2.0680	2.4038	0.1298
종류 C5	0.8000	1.1000	0.0400	0.0280	0.0000	1.9680	2.2346	0.1182
종류 C-e	0.8000	0.5000	0.0400	0.0280	0.0000	1.3680	1.4938	0.0403
종류 C-w	0.8000	0.0000	0.0400	0.0280	0.0000	0.8680	0.8680	0.0000
종류 CP	0.8000	0.5000	0.0400	0.0280	0.0000	1.3680	1.3680	0.0000
종류 PRS	0.8000	0.6000	0.0400	0.0280	0.0000	1.4680	1.4680	0.0000
종류 PRS-e	0.8000	0.3000	0.0400	0.0280	0.0000	1.1680	1.1680	0.0000
종류 S	0.8000	0.3500	0.0400	0.0280	0.0000	1.2180	1.4612	0.1079
종류 S-PRS	0.8000	0.1800	0.0400	0.0280	0.0000	1.0480	1.0480	0.0000
종류 S-I	0.8000	0.0300	0.0400	0.0280	0.0000	0.8980	0.8980	0.0000
종류 I	0.8000	0.1000	0.0400	0.0280	0.0000	0.9680	1.2428	0.1408
종류 N	0.8000	0.0000	0.0400	0.0280	0.0000	0.8680	0.8680	0.0000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 ※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장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상기 작성기준일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기타비용 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되었습니다.
- ※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거래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 및 기타비용을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용에 따라 안분한 값의 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값과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된 추정치들(즉,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기타비용, 피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비율)은 각기 다른 대상기간의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위 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예상비용은 다음과 같이 예상되는 바, 이러한 비용은 실제운용비용 및 투자자의 수익증권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기준, 단위: 원)

종류	투자기간	1년	3년	5년	10년
종류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07,752	714,950	1,163,887	2,497,996
종류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333,070	794,765	1,303,784	2,816,441

종류	투자기간	1년	3년	5년	10년
종류 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75,998	447,745	747,346	1,637,673
종류 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00,442	524,804	882,413	1,945,125
종류 C1, C2, C3, C4,C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42,688	731,715	1,222,224	2,644,619
종류 C1, C2, C3, C4,C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66,578	806,166	1,369,726	2,984,810
종류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0,202	441,985	774,702	1,763,440
종류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53,094	482,630	845,943	1,925,604
종류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8,958	280,441	491,551	1,118,908
종류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8,958	280,441	491,551	1,118,908
종류 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0,202	441,985	774,702	1,763,440
종류 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40,202	441,985	774,702	1,763,440
종류 PR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0,450	474,294	831,332	1,892,347
종류 PR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50,450	474,294	831,332	1,892,347
종류 PRS-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9,704	377,368	661,442	1,505,627
종류 PRS-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9,704	377,368	661,442	1,505,627
종류 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4,829	393,522	689,757	1,570,080
종류 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49,753	472,097	827,482	1,883,581
종류 S-PR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7,406	338,597	593,485	1,350,940
종류 S-PR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7,406	338,597	593,485	1,350,940
종류 S-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2,033	290,134	508,540	1,157,580
종류 S-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2,033	290,134	508,540	1,157,580
종류 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9,207	312,750	548,181	1,247,814
종류 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27,370	401,535	703,801	1,602,049
종류 N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8,958	280,441	491,551	1,118,908
종류 N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8,958	280,441	491,551	1,118,908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 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모두 자신타 및 자 투자신타에서 발생하는 예상비용을 모두 합한 수치입니다.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투자기간별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설명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선취판매수수료는 종류A 및 종류 A-c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종류 S는 10년 동안 보유하는 것을 가정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 과세

(1) 수익자에 대한 과세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제외)

투자자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간이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개인 15.4%, 일반법인 15.4%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가입자부담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연금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금액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 적용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 (연금수령)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에 한함)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시 과세	연금소득으로 3.3~5.5% 분리과세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주1)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함.

※ 위 내용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시행됩니다.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향후 세법의 변경, 과세 당국의 해석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정확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1)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공고·게시일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구분	내용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신탁계약에 명시된 기발생된 부채, 수수료,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 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fidelity.co.kr),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2) 매입 및 환매 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5시) 중에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구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경과후
매입	<p>-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 D $D+1$ $D+2$ 자금납입 수익증권 매입 (5시 이전) ($D+2$ 기준가 적용) </p>	<p>-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 D $D+1$ $D+2$ $D+3$ 자금납입 수익증권 매입 5시 경과후 ($D+3$ 기준가 적용) </p>
환매	<p>-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p> <p>- 제8영업일(D+7)에 환매대금 지급</p> <p style="text-align: center;"> D $D+2$ $D+7$ 환매청구 기준가 환매대금 (5시 이전) 적용 지급 </p>	<p>-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p> <p>- 제9영업일(D+8)에 환매대금 지급</p> <p style="text-align: center;"> D $D+3$ $D+8$ 환매청구 기준가 환매대금 (5시 경과후) 적용 지급 </p>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4. 전환절차 및 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 까지를 말함)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종류 C1 → 종류 C2
-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종류 C2 → 종류 C3
-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종류 C3 → 종류 C4
-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 종류 C4 → 종류 C5

※ 2011년 1월 17일 이전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종류별 수익증권 보유기간의 산정은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매수한 일자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위의 수익증권의 전환절차에 따라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 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됩니다. 또한, 매수청구 또는 환매청구를 진행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이 전환되지 아니합니다

IV 요약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 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삼일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제8기 및 제7기의 각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기 재무제표의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며 참조용으로 기재됩니다.

(단위: 일)

요약재무정보	제 9 기(반기)	제 8 기	제 7 기
	20150630	20141231	20131231
I. 운용자산	55,736,231,704	31,502,405,443	45,833,588,938
증권	55,168,688,016	31,195,350,689	45,372,296,356
현금 및 예치금	567,543,688	307,054,754	461,292,582
II. 기타자산	1,042,321,033	590,481,717	382,149,488
자산총계	56,778,552,737	32,092,887,160	46,215,738,426
II. 기타부채	1,142,285,850	564,501,190	456,143,424
부채총계	1,142,285,850	564,501,190	456,143,424
I. 원본	55,860,586,570	32,581,129,299	63,726,218,376
II. 수익조정금	-425,540,798	4,615,739,104	8,865,454,932
III. 이익잉여금	201,221,115	-5,668,482,433	-26,832,078,306
자본총계	55,636,266,887	31,528,385,970	45,759,595,002
I. 운용수익	2,207,089,079	13,061,505,845	-3,139,448,036
이자수익	3,074,719	7,875,589	12,950,153
매매/평가차익(손)	2,192,873,627	13,049,174,356	-3,152,660,187
기타이익	11,140,733	4,455,900	261,998
II. 운용비용	406,870,330	763,364,904	1,124,762,499
관련회사보수	405,303,254	760,081,974	1,120,696,109
기타비용	1,567,076	3,282,930	4,066,390
III. 당기 순이익	1,800,218,749	12,298,140,941	-4,264,210,535
* 매매회전율	0	0	0
* 매매수수료	0	0	0

※ 매매 수수료는 손익계정항목이 아니므로 난외계정으로 표시하였습니다.